

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4. . . 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임용권중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소방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인사권 확보와 위임사무의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직원중 지방5급이하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
- 도지사 관장사무중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조정  
- 현행 48개 단위 사무 → 4개단위 사무로 축소

### □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: 따로불임
- 충청북도소방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 : 따로불임
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 : 따로불임

##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(안)

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 중 "출장소장 및 소방서장"을 "증평출장소장,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및 소방서장"으로 한다.

제2조 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며, 제2항 중 "별표2"를 "별표4"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"별표2"와 같다
  -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"별표3"과 같다
- "별표1" 권한 위임 사무 중 방호과 소관 사무는 삭제한다.

제5조 중 "출장소장 소방서장은"을 "증평출장소장,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및 소방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'별표 2'

권한 위임 사무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총무과	1	충청북도의회사무처 직원중 지방5급이하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	지방공무원법제 6조 제2항

권한 위임 사무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방호과	1	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권	소방법 제16조
	2	위험물 제조소등의 승계	소방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2조
	3	예방규정의 인가권	소방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62조
	4	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취소, 사용정지 명령권	소방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62조